

긴 급 발 주 사 유 서

[사업명 :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]

1. 관련규정

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

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 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

1.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

*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정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, 위 제5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호(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)를 근거로 한다.

2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
- 과업기간 : 계약체결일부터 2년,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.
- 계약상대자는 부산고등법원이 지정하는 운영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
- 추진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

3. 긴급발주 사유

- 근거: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4호(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)
- 합의해지로 인하여 신규 운영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, 구내식당 운영 공백이 발생하여 직원복지 저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
-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, 제안서 작성 및 제출,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, 협상 절차 등 통상적인 입찰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
- 이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긴급히 운영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긴급공고로 추진하고자 함